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서)

(임시주주총회)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수원지방법원 결정(성남지원 2022비합19) 및 상법 제365조, 정관 제17조에 의거 2022년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당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이하)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2년 11월 11일(금), 오전 09시

2.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제1층 제에이-105호

3. 회의목적사항

가.보고 사항 : 감사보고

나.결의 사항

제1호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상호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목적 추가의 건

제2-3호 의안 - 수권주식수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 신주인수권 변경의 건

제2-5호 의안 - 전환사채의 발행의 건

제2-6호 의안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건

제2-7호 의안 - 의장의 건

제2-8호 의안 -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의 건

제2-9-1호 의안 - 이사 및 감사의 수의 건

제2-9-2호 의안 - 정관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제1항 변경의 건

제2-10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의 건

제2-11-1호 의안 - 대표이사등의 선임의 건

제2-11-2호 의안 - 정관 제34조(대표이사등의 선임) 변경의 건

제2-12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호의안 기존 이사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이준섭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심대찬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김원신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배상열 해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조경은 해임의 건

제3-6호 의안 사내이사 강정훈 해임의 건
제3-7호 의안 사내이사 주현성 해임의 건
제3-8호 의안 사외이사 심영호 해임의 건

제4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단,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최대 정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위 최대 정수에 이르기까지만 아래 이사후보순으로 선임결의한다.)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오상운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훈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형문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오혜명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김성근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내이사 이정환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사내이사 채덕희 선임의 건
제4-8호 의안 사내이사 강정훈 선임의 건
제4-9호 의안 사외이사 정승원 선임의 건
제4-10호 의안 사내이사 정주용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 사외이사 이기숙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 사내이사 이선희 선임의 건
제4-13호 의안 사내이사 고연우 선임의 건
제4-14호 의안 사내이사 김봉규 선임의 건
제4-15호 의안 사내이사 나현진 선임의 건
제4-16호 의안 사내이사 윤남숙 선임의 건
제4-17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욱 선임의 건
제4-18호 의안 사외이사 김남곤 선임의 건
제4-19호 의안 사외이사 김미옥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기존 감사 해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 박종률 해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 반경수 해임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감사 김윤홍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감사 박진호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증권대행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 및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안건별 찬성 및 반대 기재, 주주 서명 및 날인), 주주를 증명할수 있는 법적인 서류(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주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 개인 주주 : 위임장(안건별 찬성 및 반대 기재, 개인 주주 서명 및 날인)

신분증(주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 법인 주주 : 위임장(안건별 찬성 및 반대 기재, 법인 주주 법인 인감 날인),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 인감 날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원본)

7. 기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출입 시 안내데스크 통제에 따라 ①발열체크 ②손 소독제 사용 ③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후 출입이 허용되오니 필히 마스크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1일

주식회사 멜파스

대표이사 배 상 열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회사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로 전자투표, 본인 출석 투표, 위임장 대리 투표 등 다수의 투표권의 충돌이 예상 되어 이번 주주총회에 한하여 전자투표 방식의 의결권 행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본인 출석 투표, 위임장(서면) 대리 투표만을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결의 안건※

● 제1호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의안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멜파스 라 한다. 영문으로는 Melfas Inc.(약호 Melfas) 라 한다.	제 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토즈랩이라한다.영문으로는 ATOZLAB Inc.(약호 ATOZLAB) 라 한다.	이미지제고
제 2조(사업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 12. 위 각 호에 관련되는 직접 투자 부대사업 일체	제 2조(사업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 12. 과냉각 기술을 이용한 제품 제조 및 판매업, 유통업, 렌탈업, 위탁판매업 13. 키오스크(KIOSK) 제조 및 판매업, 렌탈업 14.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제조 및 판매업, 유통업, 렌탈업, 위탁판매업 15. 위 각 호에 관련되는 직접 투자 부대사업 일체	신규사업 진출
제5조(수권주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5조(수권주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0주로 한다.	수권주식수 증가
제 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로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인수권 완화	
	제 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p>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6.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9.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제 14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 14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자금조달</p>
<p>제 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 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자금조달</p>
<p>제 21조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p> <p>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도 대비, ② 의 조문 착오 기재 정정</p>
<p>제27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제27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p> <p>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 및 해임의 건 외에 적대적 기업 인수 및 합병 등 이사 선임 및 해임의 건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8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② 제①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의 건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 제①항의 개정 또는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100분의8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7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경영권방어</p>

<p>제 29조(이사 및 감사의 수)</p> <p>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p>	<p>제 29조(이사 및 감사의 수)</p> <p>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② 적대적 기업 인수 및 합병에 의해 제①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의 경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 제①항의 개정 또는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80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③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p>	<p>신규사업진출</p>
<p>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p> <p>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 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p>	<p>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p> <p>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고, 사외 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p>	<p>이사 정원수 변경</p>
<p>제38조(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38조(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경영 효율화</p>
<p>제34조(대표이사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4조(대표이사등의 선임)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로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경영 효율화</p>
<p>제34조(대표이사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4조(대표이사등의 선임)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도 대비</p>
<p>제39조(이사회 결의방법)</p> <p>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 37조 제2항의 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39조(이사회 결의방법)</p> <p>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 38조 제2항의 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2항의 조문 착오기재 정정</p>

● 제3호의안 기존 이사 해임의 건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이준섭	57.11.26	- 드림랜드 본부장 - 양평리조트 사장 - 어린이대공원 사장 - 다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2024.10.06 (2021.10.28 직무정지 가처분)
심대찬	76.05.09	- 유한회사 가안인사이트 대표이사 - 주식회사 하랑테크 대표이사 - 주식회사 도시간디앤씨 대표이사 - 도시간홀딩스 설립 - 도시온자산운용 대표이사	2024.10.06 (2021.10.28 직무정지 가처분)
김원신	75.09.13	- 미디어월 근무	2024.10.06 (2021.10.28 직무정지 가처분)
배상열	66.11.21	-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 Ritz Holdings 대표 - Pantech 중국 시장 총경리(상무이사) - 소디프 IT 본부장(전무이사) - 글로벌 무선통신기업 시너지 COO - Melfas 중화지역 고문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중화지역 영업담당	2024.03.29
조경은	85.01.24	- 차차컴퍼니 대표이사	2024.10.06 (2021.10.28 직무정지 가처분)
강정훈	77.11.28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Arthur .D. Little Korea Consultant - Deloitte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주)센트럴 CFO - 현 주식회사 밀탑 대표이사	2024.10.06 (2022.04.21. 임시지위 취소)
주현성	72.02.20	- AP우주통신(주) 경영기획 팀장 - (주)도움 경영기획 이사 - (주)코스온 IR본부장	2024.10.06 (2022.04.21. 임시지위 취소)
심영호	84.08.25	- 유지글로벌실장 - 뉴레이크얼라이언스부장 - 한양증권 팀장 - 트리온파트너스 이사	2024.10.06 (2022.04.21. 임시지위 취소)

(*1) 임시주주총회(2021.10.7.)에서 이사 선임(이하 "제1임시주주총회") : 강정훈, 주현성, 심영호(이하 "강정훈 등")

(*2) 임시주주총회장(2021.10.7.) "출입문 앞"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이하 "제2임시주주총회") : 이준섭, 심대찬, 김원신, 조경은, 박종율(이하 "이준섭 등")

※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성남지원 2021카합50218](#))에 따라 "강정훈 등"은 임시지위를 받았으며, "**이준섭 등**"은 **직무정지**가 당사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이준섭 571126-*****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새말길 64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심대찬 760509-*****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김원신 750913-*****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사외이사 조경은 850124-*****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감사 박종율 630816-*****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주)멜파스등기부등본 발췌

※ 2022년 04월 21일 가처분이의 결정([2021카합50286](#))에 따라, "강정훈 등"은 임시
 지위가 취소 되었습니다.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이준섭	수원지방법원 결정(성남지원 2022비합19)
심대찬	
김원신	
배상열	
조경은	
강정훈	
주현성	
심영호	

● 제4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단,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최대 정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위 최대 정수에 이르기까지만 아래 이사후보순으로 선임결의한다.)

(단,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최대 정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위 최대 정수에 이르기까지만 아래 이사후보순으로 선임결의한다.)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상운	71.10.26	사내이사	-	없음	수원지방법원 결정 (성남지원 2022비합19)
김동훈	70.09.06	사내이사	-	없음	
김형문	62.07.01	사외이사	-	없음	
오혜명	60.03.07	사외이사	-	없음	
김성근	83.11.28	사외이사	-	없음	
이정환	78.12.01	사내이사	-	없음	
채덕희	74.09.28	사내이사	-	없음	
강정훈	77.11.28	사내이사	-	없음	
정승원	66.11.21	사외이사	-	없음	
정주용	60.08.28	사내이사	-	없음	
이기숙	79.12.20	사외이사	-	없음	
이선필	71.08.25	사내이사	-	없음	
고연우	87.11.16	사내이사	-	없음	
김봉규	66.02.17	사내이사	-	없음	
나현진	80.10.18	사내이사	-	없음	
윤남숙	62.09.20	사내이사	-	없음	
김경옥	80.02.01	사외이사	-	없음	
김남곤	83.10.27	사외이사	-	없음	
김미옥	72.10.01	사외이사	-	없음	
총 (19)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오상운	(주)청운파트너스	1994.02 2015.04~2019.01 2021.02~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패밀리오피스투자자문 이사 現) (주)청운파트너스 상무	없음
김동훈	(주)청운파트너스	1996.02 2004.07~2005.03 2022.01~현재	충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키이스트 이사 현) (주)청운파트너스 지배인	없음
김형문	서종힐스주식회사	1985.02 2004.01~2015.12 2021.03~현재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서장개발주식회사 이사 서종힐스주식회사 감사	없음
오혜명	오혜명뉴욕연합치과	1984 1986.05~현재	경북대학교 치의학과 오혜명뉴욕연합치과	없음

김성근	변호사	15.06~15.12 15.12~17.04 17.05~20.04 20.04~21.08 21.10~현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 제이에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법무실 법률사무소 해주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변호사	없음
이정환	(주)자이언즈데이 대표이사	05.09~08.02 10.10~14.11 16.09~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주)역사 대표이사 (주)자이언즈데이 대표이사	없음
채덕희	(주)메타플바이오 이사	99.03~04.02 15.10~17.07 17.07~18.02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유)두드림컴퍼니 이사 (주)비비력코리아 이사	없음
강정훈	공인회계사	03.02 07.10~09.11 10.08~10.11 10.12~11.08 18.12~19.10 21.10~22.04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rthur .D. Little Korea Consultant Deloitte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주)센트럴 CFO 주식회사 멜파스 대표이사	없음
정승원	중앙산업 영업상무	87.11~96.12 97.02~98.12	대한노블전자(주) 생산관리 부장 하나기계공업(주) 총괄관리 부장	없음
정주용	나래건기(주)사내 이사	84.03~86.08 03.01~05.06 05.10~10.05 18.10~현재	강원대학교 행정학 석사 주)아이엘원 대표이사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사 나래건기(주)사내이사	없음
이기숙	(주)리펀드100코리아 이사	98.03~01.12 02.02~05.09 08.03~12.11 13.01~16.03 22.01~현재	(주)고려해운항공 근무 (주)엠아이테크 근무 (주)유니텔레콤 근무 (주)국제종합중기 근무 (주)리펀드100코리아 이사	없음
이선필	(주)큐빅셀 센터장	17.02~19.05 21.05~22.03 22.03~현재	(주)이오테크닉스 팀장 (주)엘아이에스 사업부장 (주)큐빅셀 센터장	없음
고연우	위노바 대표이사	19.08~현재	위노바 대표이사	없음
김봉규	세진항공 대표이사	04.05~현재	세진항공 대표이사	없음
나현진	가온투자자문	11.01~12.01 13.01~17.01 20.04~현재	유진투자증권 대리 미래에셋대우 매니저 가온투자자문 이사	없음
윤남숙	(주)비케이모바일 대표	18.01~20.10	(주)비케이모바일 대표	없음
김경욱	(주)테드인베스트먼트	20.01~현재	(주)테드인베스트먼트 이사	없음
김남곤	법무법인 루트	15.03~20.02 20.03~현재	법무법인(유한)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루트 변호사	없음
김미옥	변호사	13.03~16.12 17.12~현재	법무법인 유승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오상운	부	부	무
김동훈	부	부	무
김형문	부	부	무
오혜명	부	부	무
김성근	부	부	무
이정환	부	부	무
채덕희	부	부	무
강정훈	부	부	무
정승원	부	부	무
정주용	부	부	무
이기숙	부	부	무
이선필	부	부	무
고연우	부	부	무
김봉규	부	부	무
나현진	부	부	무
윤남숙	부	부	무
김경옥	부	부	무
김남곤	부	부	무
김미옥	부	부	무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 김형문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이사회 의사결정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소행을 해 나갈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상호 업무진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사외이사 후보 오혜명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이사회 의사결정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소행을 해 나갈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상호 업무진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사외이사 후보 김성근

[전문성과 독립성]

회사의 경영의사 결정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주의 추천 받은 사외이사로서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추구 하고자 합니다.

[의무]

이사회 참석시 의안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의사결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주 및 종업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항상 주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회사업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윤리성]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말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회사에 인사 청탁을 하거나 기타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행사하여 업무에 절대 관여 하지 않겠습니다.

- 사외이사 후보 정승원

[전문성과 독립성]

회사의 경영의사 결정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주의 추천 받은 사외이사로서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추구 하고자 합니다.

[의무]

이사회 참석시 의안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의사결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주 및 종업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항상 주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회사업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윤리성]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말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회사에 인사 청탁을 하거나 기타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행사하여 업무에 절대 관여 하지 않겠습니다.

- 사외이사 후보 이기숙

[전문성과 독립성]

회사의 경영의사 결정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주의 추천 받은 사외이사로서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추구 하고자 합니다.

[의무]

이사회 참석시 의안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의사결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주 및 종업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항상 주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회사업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윤리성]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말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회사에 인사 청탁을 하거나 기타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행사하여 업무에 절대 관여 하지 않겠습니다.

- 사외이사 후보 김경욱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

회사 및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이사회 견제를 통해 직무를 수행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의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 사외이사 후보 김남곤

[전문성]

본 후보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해 나갈 것임.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 할 것임.

- 사외이사 후보 김미옥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최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사발전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직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수원지방법원 결정(성남지원 2022비합19)

● 제5호 의안 기존 감사 해임의 건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박종률	63.08.16	SK네트웍스(주)자금/회계/세무 및 영업부분리더 (주)AMS경영지원본부장 (주)벤틀코리아 경영관리 총괄 (주)카벤처CRO(위기관리책임자) (주)내일약품 경영지원 총괄본부장	2024.10.06 (2021.10.28 직무정지 가처분)
반경수	64.03.22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삼성물산 미디어사업팀 팀장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전략홍보팀/사회공헌팀 The Media &Partners Co. 대표이사	2024.03.29

=> (주)멜파스 법인등기부등본 발취

대표이사 이준섭 571126-*****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새말길 64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심대찬 760509-*****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김원신 750913-*****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사외이사 조경은 850124-*****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감사 박종율 630816-*****
 2021년 10월 07일 취임 2021년 10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28일 직무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합5021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년 10월 29일 등기

(주)멜파스등기부등본 발취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박종률	수원지방법원 결정(성남지원 2022비합19)
반경수	

● 제6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윤홍	83.12.06	-	수원지방법원 결정 (성남지원 2022비합19)
박진호	66.04.21	-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윤홍	(주)비엠비즈니스 이사	06.03~18.12 22.01~현재	(주)LS전기 근무 (주)비엠비즈니스 이사	-
박진호	(주)DNC고문	17-10~19-09 17.06~현재 21.11~현재 20.10~현재	가천대길병원 대외협력실장 (사)대한화장품협회 고문 (주)DNC고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수원지방법원 결정(성남지원 2022비합19)

위 임 장

본인은 2022년 11월 11일에 개최하는 (주)멜파스의 2022년도 임시 주주총회(그 속 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멜파스가 지정하는 (배상열, 이종주, 반경수, 김정훈, 김우현, 박미향, 안창현)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일부 목적사항만 기재하는 경우) 이하 목적사항은 확정된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추후 나머지 목적사항이 확정되면 이를 기재하여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다시 교부하겠습니다.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	제1호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변경	제2-1호 의안 - 상호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목적 추가의 건		
		제2-3호 의안 - 수권주식수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 신주인수권 변경의 건		
		제2-5호 의안 - 전환사채의 발행의 건		
		제2-6호 의안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건		
		제2-7호 의안 - 의장의 건		
		제2-8호 의안 -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의 건		
		제2-9-1호 의안 - 이사 및 감사의 수의 건		
		제2-9-2호 의안 - 정관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제1항 변경의 건		
		제2-10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의 건		
		제2-11-1호 의안 - 대표이사등의 선임의 건		
제2-11-2호 의안 - 정관 제34조(대표이사등의 선임) 변경의 건				
제2-12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호 의안	기존 이사 해임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이준섭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심대찬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김원신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배상열 해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조경은 해임의 건		
		제3-6호 의안 사내이사 강정훈 해임의 건		
		제3-7호 의안 사내이사 주현성 해임의 건		
		제3-8호 의안 사외이사 심영호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선임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오상운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훈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형문 선임의 건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단, 정관 제 2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최대 정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위 최대 정수에 이르기까지만 아래 이사후보순으로 선임결의한다.)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오혜명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김성근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내이사 이정환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사내이사 채덕희 선임의 건		
		제4-8호 의안 사내이사 강정훈 선임의 건		
		제4-9호 의안 사외이사 정승원 선임의 건		
		제4-10호 의안 사내이사 정주용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 사외이사 이기숙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 사내이사 이선필 선임의 건		
		제4-13호 의안 사내이사 고연우 선임의 건		
		제4-14호 의안 사내이사 김봉규 선임의 건		
		제4-15호 의안 사내이사 나현진 선임의 건		
		제4-16호 의안 사내이사 윤남숙 선임의 건		
		제4-17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욱 선임의 건		
		제4-18호 의안 사외이사 김남곤 선임의 건		
		제4-19호 의안 사외이사 김미옥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기존 감사 해임	제5-1호 의안 감사 박종률 해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 반경수 해임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선임	제6-1호 의안 감사 김윤홍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감사 박진호 선임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주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2022 년 월 일 시